

(비공식 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제14/2565호
경제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

투자 촉진 정책과 기준에 관한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/2565호의 내용과 관련하여, 투자위원회는 경기 회복을 위해 대기업의 투자가 목표 산업(Target Industry)에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촉진법 제16조, 18조 및 35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고시한다.

1. 모든 쟁앗¹(province)은 투자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.
2. 조건
 - 2.1 프로젝트는 A1, A2, A3 및 A4그룹에 해당해야 한다. 단,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.
 - (1) 항공 운송 서비스 및 해상 운송 서비스 등과 같이 특정한 지역이 없는 활동
 - (2) 남부 국경 지역이나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해야만 하는 조건의 활동
 - 2.2 프로젝트는 다양한 투자촉진 활동을 통해 총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아보는 활동이어야 한다.
 - 2.3 프로젝트는 투자촉진증(investment promotion certification)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실제 투자금이 10억 바트(토지 가격과 운영자금 제외) 이상이어야 한다.
 - 2.4 투자촉진 수락과 투자촉진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. 그러나 기계 수입과 완전 조업에 대한 기한 연장은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.
 - 2.5 추가 혜택 및 권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실제 투자의 증빙자료를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. 실제 투자 증빙자료의 제출 기한 연장에 대한 요청은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. 이 방안에 따른 추가 권리 및 혜택에 대한 신청서 제출일에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과 금액이 모두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한다.
3. 추가 권리 및 혜택

법인소득세 면제 만료일로부터 5년간 투자로 얻은 순수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일반세율에서 50% 감면
4. 투자촉진 신청서는 2023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.
5. 투자청은 다음의 권한을 위임받는다.
 - 이 방안에 따라 모든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추가 권리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것을 승인 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
 - 추가 권리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실제 투자 증빙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는 권한

¹ 태국의 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의 도(道)에 해당하는 개념이다. 태국에는 총 76개의 쟁앗이 있다.

본 고시문은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고시일 2022년 12월 8일

쁘라우트 찐오차 장군(General Prayut Chan-o-cha)

(Prayut Chan-o-cha)

총리

투자위원회 의장